

[서식 예]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 ○. 선고 20○○가단○○○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시 ○○구 ○○로 ○○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



산 경매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2. 원고는 소외 ●●●와 비록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결혼 전부터 원고는 조그만 옷가게 등을 운영하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위 경매사건이 20○○. ○. ○. 11:20부터 같은 일자 13:00에 종료되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낙찰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 3.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20〇〇. 〇. 〇〇. 다시 같은 집행관 20〇〇타기〇〇〇호에 의하여 동산압류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을 경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압류조서등본

1. 갑 제2호증 유체동산 경매조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각 1통1. 소장부본1통1. 송달료납부서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품명	수량(대)
○○ 에어컨(23평형)	1
○○지펠 냉장고(676ℓ)	1
○○ 16인치 스탠드 선풍기	1

물건소재지: ○○시 ○○구 ○○로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 49049 판결).		

※ (1) 관 할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함. 사물관할은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며, 전속관할임.